

「평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15일 전수일 의원이 발의하고, 2020년 10월 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.

1. 제안이유

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안 목적 및 정의 (안 제1~2조)

나.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매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(안 제5~6조)

라. 지원대상자 유형 및 세부 지원 내용(안 제7~8조)

마.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(안 제9조)

3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사회로부터 소외·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강화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취지가 있으며

-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
 - 안 제3조에서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
 - 안 제4조에서는 적용범위
 - (“평창군에 거소지 또는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”)
 -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
 -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지원대상자 유형과 세부지원내용
 - 안 제9조에서는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
 - 각각 규정하였습니다.

○ **조례안 제정과 관련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**

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를 근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며 해당 조례안의 내용은 노인복지법(제4조,제27조의2), 사회보장기본법(제5조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제정에 있어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노인복지법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제27조의2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 ①국가 또는 <u>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u>
사회보장기본법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·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.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
-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과 지원대책은 홀로사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겪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더욱 의미가 크다 보며 조례 제정과 함께 **향후 실질적 사업 발굴 및 추진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**

- 2020년 10월 현재, 전국 지자체의 조례제정은 180여 곳으로 제정율 70%이며, 강원도18개 시·군 중 7곳 군데(속초,양양,영월,원주,태백,화천,횡성)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.

4. 참고자료 : 관계법령

「노인복지법」, 「사회보장기본법」